

**수수료**(제72조의2제1항 관련)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근거법령	구 분		수수료		
			수입·반입하는 경우	수출·반출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	동물	살아있는 표본		10만원	10만원
		죽은 표본	100개 이상	5만원	5만원
			100개 미만	2만원	2만원
	식물	3,000개 이상		5만원	5만원
		3,000개 미만		2만원	2만원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

근거법령	구 분	수수료
법 제16조의2 제1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10만원
법 제16조의2 제2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5만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2만원